

평가사 관리체계 변경사항 안내

- 한국인정기구 -

1. 추진배경

- 평가인력의 역량·자질, 갑질 등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불만 지속
- 외부기관(공정위) 청렴도 조사 결과 인정업무 부패경험 지적
- 부적합 평가사에 대한 후속조치 기준 명확화 필요('20년 한국인정기구 내부심사 지적사항)
- KOLAS-KAS 통합 관련 운영요령 등 통합('22년 국제동등성평가 대비)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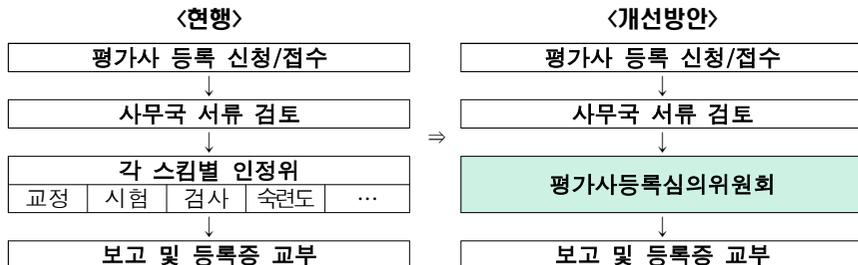
평가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4) 등 개정('22. 4. 8. 시행)

* 기존 요령명: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1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설치(KOLAS-R-001 제6조제1항)

- 평가사 등록을 위한 자격검토 및 등록 심의 일관성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평가사 등록 심의 전담 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업무범위: 한국인정기구 소관 모든 스킴의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등록/갱신/승급/평가분야 변경 등록 및 시정조치 등 심의



2 관찰평가 배점 조정(KOLAS-R-004 별지 제3호서식 제1장 및 제2장)

-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을 조정
 - 선임평가사(평가반) 리더십 배점 상향조정(20점 → 30점)
 - 기술평가사 및 평가사보의 경우 동일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므로 배점을 동일하게 조정
 - 기술전문가의 경우 평가사보다 전문지식이 더 중요하게 요구되므로 '지식'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20점 → 40점)

<평가사/기술전문가 평가 항목 및 점수배분 비교표>

구분		평가항목별 배점				합계
		지식	스킬	자질	리더십	
기존	선임평가사	20	20	40	20	100
	기술평가사	30	30	40	-	
	평가사보	40	20	40	-	
	기술전문가	20	30	50	-	
현행	선임평가사	20	20	30	30	100
	평가사 및 평가사보	30	30	40	-	
	기술전문가	40	30	30	-	

※ 제품인증 분야 배점

구분		평가항목별 배점			합계
		지식 및 스킬	자질	리더십	
	선임평가사	40	30	30	100
	평가사 및 평가사보	60	40	-	
	기술전문가	70	30	-	

3 관찰평가 점수부여 기준 제시(KOLAS-R-004 별지 제3호서식 제3장)

○ 모든 평가자가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부여 기준 제시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및 판정기준>

평가 내용	판정	점수
평가항목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적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우수	100%
평가항목에 대한 수준이 보통이며, 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보통	80%
평가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경우(기본 역량은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시) - 지각, 일정 초과 등 일정 미준수 - 평가양식 작성 오류(50% 미만) - 평가반원/피평가자 의견 경청 및 의사소통 불량 - 인정기준 및 규정 적용 오류 - 발견사항(부적합, 유의, 권고) 일부 오류	미흡	60%
평가 수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지식, 스킬, 자질 등 자격 요건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예시) - 일정 미준수로 평가에 차질 발생 - 주요 평가항목 평가 미실시 - 평가양식 작성 오류(50% 이상) - 근거 및 논리적 사유 없이 평가사 의견 강요 - 인정기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피평가기관에 강요 - 평가반원 의견 무시 - 발견사항(부적합, 유의, 권고)이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미흡	40%

* '판정'은 관찰평가 개별항목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관찰평가 총점에 대한 기준이 아님

<점수부여 기준>

구분			배점별 점수부여 기준					
			50	40	20	15	10	5
점수 부여	우수	100 %	50	40	20	15	10	5
	보통	80 %	40	36	16	12	8	4
	미흡	60 %	30	32	12	9	6	3
	매우미흡	40 %	20	24	8	6	4	2

※ (작성예시) '규정숙지' 항목의 배점은 10점이며,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는 10점, '보통'은 8점, '미흡'은 6점, '매우미흡'은 4점 부여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의견
가. 지식	1) 규정 숙지	10	[] 10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점 [] 6점 [] 4점	1.1) 인정기구 규칙, 절차 관련 지식
				1.2) 평가 원칙, 실무, 기술 관련 지식
				1.3) 일반 경영시스템 원칙 및 도구 관련 지식
				1.4) 리스크 기반 평가 원칙 관련 지식
				1.5) 적합성평가활동 관련 일반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

4 부적합 처분 기준 명확화(KOLAS-R-004 별표 3)

○ 평가사 부적합 관련 처분기준 명확화(별표3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처분은 시정조치,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 3단계로 구분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기존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편)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및 판정기준>

위반행위	처분		
	1차	2차	3차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찰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효기간 내 관찰평가 점수 평균이 75점 미만인 경우 나. 개별 관찰평가에서 1개 이상의 세부항목이 '매우 미흡'인 경우	시정조치 (3개월 이내)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취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찰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효기간 내 관찰평가 점수 평균이 65점 미만인 경우 나. 개별 평가에서 3개 이상의 세부항목이 '매우 미흡'인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취소	-
3.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조치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취소	-
4. 별표 4에 따른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직무수행규범을 위반한 경우(단, 직무수행규범 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취소	-
5. 평가 시,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한 경우(욕설, 폭언, 성추행 발언 등)	자격정지 (6개월 이내)	자격취소	-
6. 거짓 등 부정행위로 등록한 경우	자격취소	-	-

위반행위	처분		
	1차	2차	3차
7. 직무수행규범 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 시 특한 피평가기관의 정보를 피평가기관의 동의없이 누설한 경우	자격취소	-	-
8. 직무수행규범 제4호를 위반하여 피평가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권에 관여한 경우	자격취소	-	-
9. 본인이 신청자에게 지도 또는 자문을 제공한 후 평가에 입한 경우	자격취소	-	-
10.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평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	-
<p>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p> <p>2.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직전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p>			

【별표 3 신설 규정(제1호 및 제2호) 해설】

- 별표 3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유효기간 내 관찰평가 점수 평균'이 75점/65점 미만인 경우 각각 '시정조치', '자격정지'를 처분
- 부적합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적용하는 '유효기간 내 관찰평가 점수 평균'란 평가사 등록 유효기간(3년) 동안 평가된 각 관찰평가의 평균 점수를 의미하며, 차기 갱신 신청 시 시정조치 등 처분심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갱신과 함께 심의
- 갱신 신청은 요건 충족 시 우선 승인 후 관찰평가 관련 처분을 병행하며,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처분 불필요
- 시정조치 등 처분은 운용요령 개정안 시행일(22. 4. 8.) 이후 평가된 점수만을 활용함

5 선임평가사 양성교육 신설/의무화(KOLAS-R-004 별표 1 제3호)

- 선임평가사 승급 요건 강화

요건 구분	기존	현행(개정안)
평가 경험	기술평가사 등록 후 10회/30일 이상 현장평가 경험	(기존과 같음)
교육/훈련	<신설>	선임평가사 양성교육 이수/합격

- 선임평가사 양성 교육 이수/합격 요건은 '22. 7. 8일부터 적용

3. 평가사 등록요건/자격심의 관련 참고사항

- 평가분야 경력

- 신청 평가분야와 연관된 실무경험이 요구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하여야 함
- 증빙자료로서 단순 근무년수만 표기된 재직증명서 또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기술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보고서, 성적서, 논문 등 제출 가능

- 교육/훈련

- 평가사 양성/보수 교육은 해당 스킴에 한정하여 인정. 즉, 합격증/수료증 등에 명시된 스킴에 한하여 인정함
- 선임평가사 워크숍(보수교육)은 선임평가사에 한하여 인정됨
- * 교정 분야 선임평가사 및 시험 분야 기술평가사인 자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선임평가사 워크숍을 수료한 경우 선임평가사로 등록된 교정 분야에 한하여 보수교육으로 인정함, 시험 분야 보수교육으로 불인정